

#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사업규정

- 제정 2004.04.27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예규 제26호
- 개정 2004.08.14 영상홍보원예규 제40호
- 개정 2005.08.02 영상홍보원예규 제42호  
(영상홍보원 기본운영규정)
- 개정 2006.06.28 영상홍보원예규 제50호
- 개정 2007.03.06 영상홍보원예규 제52호
- 개정 2007.04.11 영상홍보원예규 제56호
- 개정 2007.11.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7호
-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 개정 2013.1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8호
- 개정 2014.1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8호
- 개정 2016.09.2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0호
- 개정 2018.03.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5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의 공공채널 KTV(케이블, 위성, 인터넷, SNS, 기타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_포함. 이하 “KTV”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영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사업”이라 함은 외부기관과 행하는 협찬·광고·영상제작 및 영상자료 지원 업무 등을 말한다.
2. “협찬”이라 함은 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기획행사 등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3. “협찬주”라 함은 협찬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협찬고지”라 함은 협찬주의 명칭과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광고”라 함은 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방송순서에 송출하는 일체의 공익광고를 말한다.
6. “광고주”라 함은 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외부영상물 제작”이라 함은 의뢰처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KTV가 기획·제작한 영상물을 말한다.
8. “영상자료”라 함은 방송원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일체의 영상(음성)자료를 말한다.
9. “대행사”라 함은 방송원이 시행하는 각종 영상사업을 대행하는 외부법인(자)을 말한다.

**제3조(영상사업의 범위)** 방송원이 시행하는 영상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2.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3. 외부영상물 제작 및 송출
4. 영상자료 판매
5. 기타 영상사업

## 제2장 삭제 < 2007.03.06 >

**제4조** 삭제 <2007.03.06>

**제5조** 삭제 <2007.03.06>

**제6조** 삭제 <2007.03.06>

## 제3장 방송광고 및 외부제작 프로그램 송출

**제7조(광고 등 송출)** KTV는 방송광고 및 외부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다.

**제8조(송출내용)** 광고 송출의 시간·횟수 등 광고주가 희망하는 조건은 기획편성부장이 광고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3.19] [개정 2013.07.15]

**제9조(송출료)** KTV의 방송광고 및 외부제작 프로그램 송출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공익광고 또는 공공목적의 프로그램 및 KTV가 요청하여 제공 받은 공익광고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송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제10조(광고신청 등)** 광고주는 KTV에 광고를 약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문서에는 신청품목, 규격, 수량, 기간,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 제4장 협 찬

**제11조(협찬고지)** ① 협찬고지는 협찬주 또는 그 대행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찬주의 명칭과 협찬내용 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협찬고지의 시간·방법 등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2조(협찬금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장은 협찬금 등 협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협찬주 또는 그 대행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개정 2016.09.20]

## 제5장 외부영상물 제작

**제13조(제작비)** 제작비는 원가계산준칙 및 KTV 방송제작비지급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한다.

## 제6장 영상자료 판매

**제14조(이용료)** ① 영상자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1 영상자료 복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 ①항 4호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영상자료를 방송·정보통신 등 대중매체에 활용·배포하거나 다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2 영상자료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1] [개정 2014.11.5]

③ 저작권법 제24조의2 ①항 4호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영상자료를 원본대로 방송·정보통신 등 대중매체에 배포하거나 다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3 영상자료 방송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5]

**제15조(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1.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경우
2. 국가시책홍보 등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KTV 홍보 등 방송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별표2의2 영상자료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9.20]

**제16조(이용신청)** 영상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서신·온라인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서식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9.20]

**제1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화원판 및 방송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영상자료를 신청한 경우

## 제7장 대 행사

**제18조(선정계약)** 방송원의 각종 영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행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대행수수료율)**[삭제 2016.09.20]

**제19조(대행사 관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장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그 대행사와 사업이행시 제작경비에 관한 사항, 저작권에 관한사항, 제작과정의 각종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09.20]

## 제8장 보 칙

**제20조(세입)** 이 영상사업 관련 수입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경과규정)** 본 규정상 저작권사용료 관련 사항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상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는 본 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다.[신설 2018.03.15]

**부 칙 <예규 제26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04.27부터 시행한다.
- 2.(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협찬·광고관리업무규정(예규 제15호, 2001.09.03)은 폐지한다.

**부 칙 <예규 제40호>**

이 규정은 2004.08.14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영상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5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현 영상홍보원에서 기 제정 시행중인 훈령 및 다른 예규의 예규명, 본문, 별표(서식포함) 내용중 기획편성과는 기획편성팀으로, 영상제작과는 방송제작팀으로, 기술과는 방송기술팀으로, 영상자료과는 영상콘텐츠팀으로, 서무과는 운영관리팀으로, 기획편성과장은 기획편성팀장으로, 영상제작과장은 방송제작팀장으로, 기술과장은 방송기술팀장으로, 영상자료과장은 영상콘텐츠팀장으로, 서무과장은 운영관리팀장으로 변경하여 이 예규와 동시에 시행한다.

## 부 칙 <예규 제50호>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예규 제52호>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예규 제56호>

이 규정은 2007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예규 제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68호, 2008.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현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기 제정 시행중인 훈령 및 다른 예규의 예규명, 본문, 별표(서식포함) 내용 중 국정홍보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국정홍보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기획편성팀은 기획편성과로, 기획편성팀장은 기획편성과장으로, 방송기술팀은 방송기술과로, 방송기술팀장은 방송기술과장으로, 영상콘텐츠팀은 영상콘텐츠과로, 영상콘텐츠팀장은 영상콘텐츠과장으로, 운영관리팀은 운영관리과로, 운영관리팀장은 운영관리과장으로 변경하여 이 예규와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01호, 2013.07.15>**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13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현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기 제정 시행중인 훈령 및 다른 예규의 예규명, 본문, 별표(서식포함) 내용 중 기획편성과는 기획편성부로, 방송제작과는 방송제작부로, 방송보도과는 방송보도부로, 방송영상과는 방송영상부로, 방송기술과는 방송기술부로, 운영관리과는 운영관리부로 하며, 기획편성과장은 기획편성부장으로, 방송제작과장은 방송제작부장으로, 방송보도과장은 방송보도부장으로, 방송영상과장은 방송영상부장으로, 방송기술과장은 방송기술부장으로, 운영관리과장은 운영관리부장으로 변경하여 이 예규와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08호>**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18호>**

이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30호>**

이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53호>**

이 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방송광고 및 외부제작 프로그램 송출료

1. 방송광고 송출료(1회당 : 40초 기준)			
시 급	S.A급	A급	B급
금 액	600,000원	400,000원	200,000원
2. 외부제작 프로그램 송출료(1회당)			
프로그램 규격	60분까지	30분까지	10분까지
금 액	3,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 장기간 방송(시리즈물 포함) 계약시는 조정가능			

[별표 2] [개정 2016.09.20.]

## 영상자료 이용료

1. 영상자료 복사수수료					
시간 종류	30분이하	60분이하	90분이하	120분이하	비 고
CD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 포함</li> <li>○ 발송료 별도</li> <li>○ 영상자료의 제목.호수 (횃차)로 분류된 편수에 따른 시간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되, 동일 편수 내 클립단위로 신청 시는 클립단위에 따른 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용료 징수</li> <li>○ 120분 이상시 30분 단위로 2,000원 할증</li> </ul>
<u>DVD</u>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는 수요자 부담</li> <li>○ 우편발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li> <li>○ 영상자료의 제목.호수 (횃차)로 분류된 편수에 따른 시간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되, 동일 편수 내 클립단위로 신청 시는 클립단위에 따른 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용료 징수</li> <li>○ 120분 이상시 30분 단위로 2,000원 할증</li> </ul>
USB, 외장하드, 이메일, 웹하드,기타 전자수단에 의한 제공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비는 수요자 부담</li> <li>○ 우편발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li> <li>○ 영상자료의 제목.호수 (횃차)로 분류된 편수에 따른 시간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되, 동일 편수 내 클립단위로 신청 시는 클립단위에 따른 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용료 징수</li> <li>○ 120분 이상시 30분 단위로 2,000원 할증</li> </ul>

## 2. 영상자료 저작권사용료

구 분	기본료 (자료검색/ 편집/복사료)	10초이하	추가초당	비 고
영리용	100,000원	20,000원	1,000원	○ 사용기간은 1년 기준으로 하되 연장시 50% 할인
비영리	50,000원	10,000원	500원	

## 3. 영상자료 방송권료

구 분	10분이하	30분이하	60분이하	비 고
영리용	5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 60분이상의 경우 매10분 초과시 10만원씩 가산 ○ 희귀자료 할증 - 70년 이전 : 2배
비영리	250,000원	500,000원	750,000원	

※ 판매 조건 : 2차 저작물 제작사용 금지(방송권만 판매)

